

제312회 고흥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(2023. 2. 17.)에서 의결된
'고흥군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'을 아래와 같이 공포한다.

2023년 2월 17일

고흥군의회 의장  이재항

규칙 제2023- 4/ 호

고흥군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고흥군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제61조”를 “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제59조”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 (목적) 이 규칙은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흥군의회에 제출되는 청원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	<p>제1조 (목적) -----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제59조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